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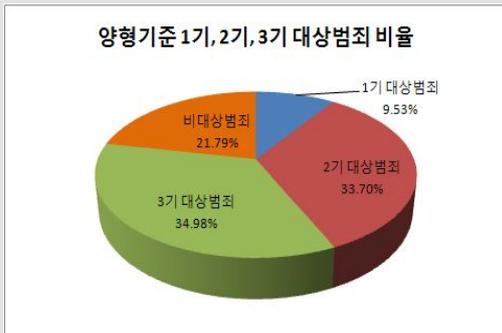
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 <p style="margin: 0;">2015. 2. 2.</p>	 <h2 style="margin: 0;">대 법 원</h2> <p style="margin: 0;">Supreme Court of Korea</p>	
	담당부서	양형위원회
	담당자	운영지원단장 김세중 (☎ 3480-1924)
	공보관실 ☎ 3480-1451	

##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

- 양형위원회는 2015. 2. 2. 16: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6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『장물, 권리행사방해, 업무방해, 손괴, 사행성·게임물범죄 양형기준』을 확정 의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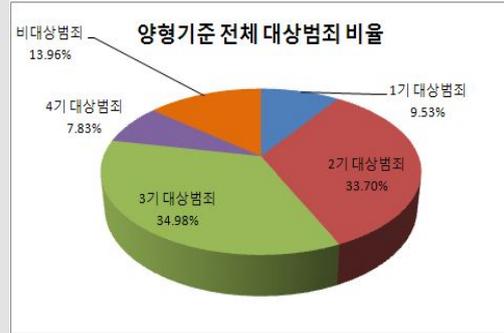
### ※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현황

[1기+2기+3기 양형기준]



누적비율: **78.2%**

[1기+2기+3기+4기 양형기준]



누적비율: **86.0%**

- 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**9개 범죄군** 전부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함으로써 **구공판사건 기준 약 86.0%**를 차지하는 **대부분의 중요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 완료**

- 전반기(4개) : 배임수증채, 변호사법위반, 체포·감금·유기·학대, 성매매범죄
- 후반기(5개) : 장물, 권리행사방해, 업무방해, 손괴, 사행성·게임물범죄

### ① 장물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

- 기업형 스마트폰 장물범행과 같이 절도, 점유이탈물횡령 등 다른 재산범죄를 유발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장물범죄에 대한 객관

적 처벌기준으로서, 특히 '문화재장물범행'과 '재산범죄 유발형 장물범행'에 대한 엄정한 처벌기준 마련

- 문화재장물범행의 경우 일반장물 유형에서는 특별조정시(상한 1/2 가중) 최대 6년(상한 4년), 상습·누범장물 유형에서는 최대 9년(상한 6년)까지 권고
- ① “국가지정문화재(국보, 보물 등)에 대한 장물범행”인 경우, ② “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등에 대한 장물범행”인 경우, ③ 인터넷 광고 등으로 “적극적으로 본범(절도범 등)을 유발한 경우”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하고,
- ① “본범과 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(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)의 관계가 있는 경우”, 또는 ② “특별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”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
## ②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

- 보호법익에 따라 자유에 관한 죄인 '강요 유형'과 재산권에 관한 죄인 권리행사방해, 점유강취, 강제집행면탈죄로 구성된 '권리행사방해 유형'으로 대유형을 분류
- 강요 유형에서는, ①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,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등 “비난할 만한 범행동기”가 있는 경우, ②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등 “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”, ③ “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”, “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인 경우”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- 권리행사방해 유형에서는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생계 또는 경영상의 위협에 처한 경우 등 “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”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
## ③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

- 사람의 업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위계, 위력, 컴퓨터업무방해죄로 구성된 '업무방해 유형'과 경매·입찰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'경매·입찰방해 유형'으로 대유형을 분류
- 업무방해 유형에서는 ①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

등 “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”, ② 피해자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“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”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하고,

- 폭력범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제한하거나 만취상태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
-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(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) 등 “참작할 만한 범행동기”가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- 경매·입찰방해 유형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,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등 “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·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”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
#### ④ 손괴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

- 국가지정문화재 등 문화재손상범행을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여 문화재손상범행에 대하여 일반 재물손괴보다 더 높은 형량범위 권고
  - 문화재손상범행의 경우 특별조정시(상한 1/2 가중) 최대 6년(상한 4년) 또는 9년(상한 6년), 문화재특수손상범행의 경우 최대 10년6월(상한 7년), 문화재특수손상치사상범행의 경우 최대 12년(상한 8년) 또는 15년(상한 10년)까지 권고
- ① “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”, ②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 등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 “비난할 만한 범행동기”가 있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하고,
-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제한하거나 만취상태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
- ① “참작할 만한 범행동기”가 있는 경우, ② “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”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
#### ⑤ 사행성·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

-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범죄군 명칭을 ‘게임물범죄’에서 ‘사행성·게임물범죄’로 변경

- 사행성·게임물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,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
-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및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, 사행성 게임장 영업 등 다양한 형태로 저질러지는 사행성·게임물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인 처벌기준 마련
- 직관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복잡·다양한 사행성·게임물범죄들을 구성요건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5개의 대유형으로 분류
- 온라인 도박·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포함하는 ‘도박장소 등 개설’ 유형과 ‘유사스포츠토토’ 유형의 경우 더 높은 형량범위 권고(가중영역 상한 4년)
- ① “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”, ② 도금, 베팅금 등 모은 금품, 배당금, 당첨금 등을 공제한 수익금, 게임물 이용자 등 참가자 수, 영업기간, 게임기 등의 대수, 영업장의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“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”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하고,
- ① “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”, ② “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”, ③ 단속대비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“단속회피를 시도”한 경우, ④ “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유인한 경우”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- 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와 같이 “단순 가담”에 그친 경우, ② 당구장 등에서와 같이 게임기 설치 등이 “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”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
## ⑥ 향후 일정

- **2015. 2. 관보 게재 및 2015. 7. 1.부터 시행**
- ※ 다음 회의는 **2015. 3. 2.(월) 10:00** 개최 예정
- ⇒ **식품·보건,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**

# 1. 양형기준 의결 경과

## 1. 양형자료 분석

- 최근 5년 내지 7년 동안 선고된 장물, 권리행사방해, 업무방해, 손괴, 사행성·게임물범죄 사건의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조사하여 양형자료 분석

## 2. 양형기준안 마련

- 양형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및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침
- 2014. 11. 21. 장물, 권리행사방해, 업무방해, 손괴, 사행성·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확정

## 3. 의견수렴절차

- 2014. 11. 26. ~ 12. 26. : 각 범죄군별로 총 27개 내지 38개 관계기관에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여 대법원, 법무부, 대한변협 등 주요 기관의 의견회신받음
- 2014. 12. 15. 사행성·게임물, 손괴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0차 공청회 개최
- 2014. 12. 22. 권리행사방해, 업무방해, 장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1차 공청회 개최
  - 변호사, 법학 교수, 언론인, 형사정책 관련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일반 방청객의 의견 청취
- 2015. 1. 12. :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법학계, 학계, 언론계,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문위원들로부터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청취

## 4. 양형기준 최종 의결

- 의견수렴절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5. 2. 2. 장물, 권리행사방해, 업무방해, 손괴, 사행성·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

## II. 장물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

### ① 양형기준 설정 주요 대상범죄

- 장물취득 등 : 장물을 취득, 양도, 운반, 보관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(형법 제 362조)
- 문화재장물 : 국가지정문화재 등 문화재장물을 취득, 양도, 양수, 운반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(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항, 제2호, 제3호)
- 상습·누범장물(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, 제5항, 형법 제363조)

### ②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

#### 1. 일반장물 [법정형: 7년 이하(1유형), 7년 이하, 2년 이상(2유형)]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재산에 대한 장물	4월 - 10월	6월 - 1년6월	1년 - 3년
2	특별재산에 대한 장물	1년 - 2년	1년6월 - 3년	2년 - 4년

- ◆ 가중영역 해당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상한을 1/2까지 가중(이하 같음)

#### 2. 상습·누범장물 [법정형: 1년~10년, 무기, 3년 이상]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상습·누범장물	1년 - 3년	2년 - 4년	3년 - 6년

### ③ 주요 특징

- ① 국보, 보물 등 “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”인 경우, ②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“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등에 대한 장물범행”인 경우, ③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스마트폰 장물범행과 같이,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“적극적으로 본범(절도범 등)을 유발한 경우”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- 절도범 등 “본범과 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(형

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)의 관계가 있는 경우”, 또는 “특별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”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
### III.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

#### ① 양형기준 설정 주요 대상범죄

- **강요** :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(형법 제324조)
- **합의강요** :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,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(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,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)
- **상습·누범·특수강요**(폭력행위처벌법 제2조, 제3조)
- **권리행사방해** :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,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(형법 제323조)
- **점유강취, 준점유강취** :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행위 또는 준강취행위(형법 제325조 제1항, 제2항)
- **강제집행면탈** :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, 손괴,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(형법 제327조)

#### ②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

1. **강요** [법정형: 5년, 7년, 7년6월 이하(1유형), 10년 이하(2유형), 2년, 3년 이상(3유형)]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강요	- 8월	6월 - 1년	10월 - 2년
2	중강요	4월 - 1년2월	8월 - 2년	1년4월 - 3년
3	상습·누범·특수강요	10월 - 2년	1년6월 - 3년	2년6월 - 5년

2. 권리행사방해 등 [법정형: 5년 이하(1유형), 7년 이하(2유형), 10년 이하(3유형), 3년 이하(4유형)]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권리행사방해	- 8월	6월 - 1년	10월 - 2년6월
2	점유강취/준점유강취	4월 - 1년	8월 - 1년6월	1년 - 3년
3	중권리행사방해	4월 - 1년2월	8월 - 2년	1년4월 - 3년
4	강제집행면탈	- 8월	6월 - 1년	8월 - 2년

3. 주요 특징

◆ 강요 유형

- ①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,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아동 복지법상의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(청소년 성보호법 제16조,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), 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“비난할 만한 범행동기”가 있는 경우, ②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등 “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”, ③ “범행에 취약한 피해자”에 대한 범행인 경우, ④ “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”, “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인 경우”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- ① “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”, ② “참작할 만한 범행동기”가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
◆ 권리행사방해 유형

- ① 강제집행면탈범행 과정에서 재판절차를 이용하는 등 “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”, ②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생계 또는 경영상의 위협에 처한 경우 등 “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”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
- 강제집행면탈범행에서 은닉한 재산의 집행가능성 및 담보가치가 낮은 경우와 같이 “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”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
## IV.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

### ① 양형기준 설정 주요 대상범죄

- 업무방해 :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(형법 제314조 제1항)
- 컴퓨터업무방해 :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을 손괴,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,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(형법 제314조 제2항)
- 경매·입찰방해 :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(형법 제315조)
- 건설 입찰방해 :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등의 행위(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내지 제3호)

### ②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

#### 1. 업무방해 [법정형: 5년 이하]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업무방해	- 8월	6월 - 1년6월	1년 - 3년6월

#### 2. 경매·입찰방해 [법정형: 2년 이하(1유형), 5년 이하(2유형)]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 경매·입찰방해	- 8월	6월 - 1년	10월 - 2년
2	건설 입찰방해	6월 - 1년	10월 - 2년	1년6월 - 4년

### ③ 주요 특징

#### ◆ 업무방해 유형

- ① 흉기 등을 휴대하여 범행하거나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등 “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”, ② 피해자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“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”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-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방해범죄를 범한 경우, 폭력범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제한하거나 만취상태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
-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(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) 등 “참작할 만한 범행동기”가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

#### ◆ 경매·입찰방해 유형

-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,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등 “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·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”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

## V. 손괴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

### ① 양형기준 설정 주요 대상범죄

- **재물손괴** : 타인의 재물,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(형법 제366조)
- **상습·누범·특수손괴(폭력행위처벌법 제2조, 제3조, 형법 제369조)**
- **재물손괴치사상** : 재물손괴죄 등을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(형법 제368조 제2항)
- **문화재손상** : (국가)지정문화재 등을 손상,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

용을 해하는 행위 등(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, 제2항, 제4항)

- 문화재특수손상(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1항)
- 문화재특수손상치사상 : 문화재특수손상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 등을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(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)

## ②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

### 1. 일반적 기준 [법정형: 3년 이하(1유형), 10년 이하(2유형), 2년 이상(3유형), 3년 이상(4유형)]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재물손괴 등	- 6월	4월 - 10월	8월 - 1년6월
2	공익건조물파괴	4월 - 1년	8월 - 2년	1년6월 - 4년
3	지정문화재손상 등	1년 - 2년6월	1년6월 - 3년	2년6월 - 4년
4	국가지정문화재손상	1년6월 - 3년	2년 - 4년	3년 - 6년

### 2. 상습·누범·특수손괴 [법정형: 1년 이상(1유형), 2년 이상(2유형), 2년~45년, 3년~45년(3유형)]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상습·누범·특수손괴 등	4월 - 10월	8월 - 1년6월	1년 - 2년
2	상습특수·누범특수손괴	6월 - 2년	1년 - 3년	2년 - 4년
3	문화재특수손상	1년 - 3년	2년 - 4년	3년 - 7년

### 3.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[법정형: 1년 이상(1유형), 3년 이상(2유형), 무기, 5년 이상(3유형), 사형, 무기 5년 이상(4유형)]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재물손괴·공익건조물파괴치상	6월 - 1년6월	10월 - 2년6월	1년6월 - 4년6월
2	재물손괴·공익건조물파괴치사	1년6월 - 3년	2년 - 5년	4년 - 7년
3	문화재특수손상치상	2년6월 - 4년	3년 - 6년	5년 - 8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4	문화재특수손상치사	3년 - 6년	5년 - 8년	7년 - 10년

### ③ 주요 특징

- ① “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”, ②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 등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 “비난할 만한 범행동기”가 있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**가중 처벌**
-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손괴범죄를 범한 경우, 폭력범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제한하거나 만취상태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
- ① “참작할 만한 범행동기”가 있는 경우, ② “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”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**형을 감경**

## VI. 사행성·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

### ①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

#### 1. 도박장소 개설 등 [법정형: 3년, 5년 이하(1유형), 5년 이하(2, 3유형)]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복권 발행, 복표 발매·중개	4월 - 10월	6월 - 1년6월	1년 - 3년
2	사행성 유기기구 영업, 무허가 카지노업	4월 - 10월	8월 - 1년6월	1년 - 3년6월
3	도박장소·공간 개설	4월 - 10월	8월 - 1년6월	1년 - 4년

**2. 불법 스포츠도박 등 [법정형: 3년 이하(1유형), 5년 이하(2유형), 5년, 7년 이하(3유형)]**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유사경륜·경정 등	4월 - 10월	8월 - 1년6월	1년 - 3년
2	유사경마	4월 - 10월	8월 - 1년6월	1년 - 3년6월
3	유사스포츠토토	4월 - 1년	8월 - 2년	1년6월 - 4년

**3.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[법정형: 2년 이하(1유형), 5년 이하(2, 3유형)]**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	- 8월	6월 - 1년2월	10월 - 2년
2	환전·환전알선·재매입 영업	4월 - 10월	6월 - 1년6월	1년 - 3년6월
3	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	4월 - 10월	8월 - 1년6월	1년 - 3년6월

**4. 불법게임물 등 유통 [법정형: 2년 이하(1유형), 5년 이하(2유형)]**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	- 8월	6월 - 1년2월	10월 - 2년
2	미등급·사행성게임물, 사행성 유기기구,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	4월 - 10월	8월 - 1년6월	1년 - 3년6월

**5. 무허가·무등록 영업 [법정형: 2년 이하(1유형), 3년 이하(2유형)]**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게임제작·배급업, 게임제공업	- 6월	4월 - 10월	8월 - 2년
2	사행행위영업, 사행기구 제조·판매업	- 8월	6월 - 1년4월	10월 - 2년

**② 주요 특징**

- ①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적용되는 '도박장소 개설 등' 유형, ②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등에 적용되는 '불법 스포츠도박 등' 유형, ③ 사행

성 게임장 영업 등에 적용되는 ‘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’ 유형, ④ 사행성 게임물 공급 등에 적용되는 ‘불법게임물 등 유통’ 유형, ⑤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등에 적용되는 ‘무허가·무등록 영업’ 유형으로 **대유형 분류**

- ① “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”, ② 도금, 베탱금 등 모은 금품, 배당금, 당첨금 등을 공제한 수익금, 게임물 이용자 등 참가자 수, 영업기간, 게임기 등의 대수, 영업장의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“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”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**가중처벌**
- ① “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”, ② “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”, ③ 단속대비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“단속 회피를 시도”한 경우, ④ “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유인한 경우”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여 **가중처벌**
- 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와 같이 “단순 가담”에 그친 경우, ② 당구장 등에서와 같이 게임기 설치 등이 “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”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**형을 감경**